

심 사 보 고 서

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

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47
----------	-----

2023. 11. 27.(월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10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제413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(2023년 11월 20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두환)

가. 제안이유

- 미·중 갈등, 국지적 전쟁, 자국 우선주의 등의 지속에 따라 글로벌 교역환경이 악화되고 대중수출이 급감함에 따라,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서 아세안의 잠재력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
- 특히, 베트남은 우리와 교역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의 무역 흑자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양국의 관계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음
- 호치민은 베트남 GDP의 23%를 담당하는 경제중심지로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9%(2022년)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, 의료기기, 전자 등 전략산업을 공유하고 있어 교역 및 산업 간 교류 협력에 따른 실익이 큰 협력 파트너

지역이라 할 수 있음

- 특히, 호치민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도내 전략산업 핵심역량 확충, 기업인 간 교류를 통한 교역확대, 직항 개설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, 중복형 스마트팜 및 중복농산물 베트남 진출 교두보로서 적극 활용하고 민선 8기 충북도정 주요 현안의 역동적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
- 따라서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‘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’에 의거 베트남 호치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자매결연체결 장소와 시기는
 - 충청북도 대표단이 2023년 12월경에 호치민시를 방문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
- 자매결연협정서의 주요 내용은
 - 무역 교류 증진 및 민간투자 촉진 지원 등 경제협력 활성화
 - 농업, 항공·관광,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교류 및 우수 연구 인력 초청 유학, 교류 등 교육 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- 가. 「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

나. 「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는 자매결연체결 전에 서신교환, 상호방문, 주민, 학계, 사회단체 등 상호교환 초청 등 여러형태의 충분한 사전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건의 경우 단기간에 추진되어 주민, 학계, 사회단체 사전교류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음

다.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자매결연 체결시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해 추진되도록 하고 동 건 자매결연의 경우는 사후관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 해소되어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

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

의안
번호

447

제출연월일 : 2023년 10월 2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미·중 갈등, 국지적 전쟁, 자국 우선주의 등의 지속에 따라 글로벌 교역환경이 악화되고 대중수출이 급감함에 따라,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서 아세안의 잠재력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
- 특히, 베트남은 우리와 교역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의 무역 흑자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양국의 관계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음
- 호치민은 베트남 GDP의 23%를 담당하는 경제중심지로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9%(2022년)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, 의료기기, 전자 등 전략산업을 공유하고 있어 교역 및 산업 간 교류 협력에 따른 실익이 큰 협력 파트너 지역이라 할 수 있음
- 특히, 호치민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도내 전략산업 핵심역량 확충, 기업인 간 교류를 통한 교역확대, 직항 개설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, 충북형 스마트팜 및 충북농산물 베트남 진출 교두보로서 적극 활용하고 민선 8기 충청도정 주요 현안의 역동적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
- 따라서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양 지역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'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'에 의거 베트남 호치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자매결연체결 장소와 시기는

- 충청북도 대표단이 2023년 12월경에 호치민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

○ 자매결연협정서의 주요내용은

- 무역교류 증진 및 민간투자 촉진 지원 등 경제협력 활성화
- 농업, 항공·관광,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교류 및 우수 연구인력 초청 유학, 교류 등 교육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

3. 참고사항 : 붙임

- 양 지역 비교표
- 베트남 개황
- 위치도
- 양 지역 교류현황 및 향후 교류계획
- 자매결연 및 교류 협정의 기대효과
- 자매결연협정서(안)

I

양 지역 비교표

구 분	충 청 북 도	베트남 호치민시
면 적	○ 7,406.7km ²	○ 2,061.2km ²
인 구	○ 164만명	○ 908만 명
위 치	○ 대한민국의 중앙 ○ 바다에 접하지 않는 유일한 내륙도	○ 베트남 동남부 ○ 사이공강의 서안
주 도	○ 청주	○ 호치민시
기 후	○ 온대 몬순 기후	○ 열대 사바나 기후
시 차	○ GMT + 0900	○ GMT + 0700
GRDP	○ USD 54억 달러	○ USD 553억 달러
1인당 GRDP	○ USD 35,233 달러	○ USD 6,180 달러
산 업	○ 광제조 : 51.1% ○ 서비스 : 40% ○ 건설업,농어업 등: 8.9%	○ 서비스 : 51.1% ○ 산업 및 건설 : 47.7% ○ 임업·농업 및 기타 : 1.2%
공 항	○ 청주국제공항 (연간 이용객 317만명, 취항지 5개국)	○ 떤선녓 국제공항 (연간 이용객 3,250만명, 취항지 17개국)
관광자원	○ 속리산국립공원 ○ 소백산국립공원 ○ 월악산국립공원 ○ 청남대, 직지 등	○ 구찌 터널 ○ 메콩델타 ○ 벤틀 시장 ○ 전쟁잔존박물관, 통일궁 등

II

베트남 개황

국 명	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(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)
독립일	1945. 9. 2
수 도	하노이(Hanoi, 인구 약 805만명)
행정구역	58개 성, 5개 중앙직할시(호치민, 하노이, 하이퐁, 다낭, 껀터)
면 적	330,341km(한반도의 약 1.5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부 : 메콩(Mekong)강 하구 델타를 비롯한 평야지대 - 중부 : 대부분 산악지대, 추옹송산맥이 남북으로 종단 - 북부 : 대부분 산악지대,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약 1,140km인 홍해(송코이 강)가 중국 운남성에서 발원</p>
기 후	아열대(북부), 열대몬순(남부)
민 족	비엣족(깁족, 전인구의 89%), 타이족, 화교(약 82만명), 크메르 족 등 54개 소수민족
공용어	베트남어
종 교	불교(70%), 가톨릭(10%)
인 구	9,895만명(2020년 기준)



□ 양 지역 교류현황

- '09~'23 총 28회 도내 무역사절단 호치민 방문, 시장개척 추진
 - 도내 340개기업 참가, 수출상담 260백만불, 계약금액 134백만불
- '23. 6. 경제부지사 'CICON HCMC 2023*' 참석 계기,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면담, 교류협력 의향 표명
 - * 2023.06.06. ~ 06.08/호치민 셰라톤호텔/코리아CEO서밋
- '23. 6. 호치민시 인민위원장, 경제부지사 "2023호치민 경제포럼" 초청
- '23. 8.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초청 지사님 명의 서한문 전달(2023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)
- '23. 9. 호치민시 인민위원장, 9월 서울방문 계기* 면담 요청
 - *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참석차 방한 (9.24~9.26)
- '23. 9. 24. 지사님,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면담, 교류·협력방안 논의

□ 향후 교류계획

- 베트남 경제수도 호치민과 연내 자매결연 체결, 실질적 협력관계 수립
- 양 지역 간 경제포럼 병행 추진을 통해, 무역·투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협력 기반 구축
- 호치민 우수 연구 인력 충북 유학을 적극 추진, 반도체, 이차전지 등 우리도 전략산업 핵심 연구·개발 인력 확충 기반 마련(도내대학 연계)
- 대한민국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 베트남 최대 공항인 호치민 떤선녓 국제공항 간 직항 개설 방안 검토·추진(정규·전세기)
 - 도내 관광객 5천만 시대 도래 촉진, 인적교류 확대의 극적 전기 마련
- 충북형 스마트팜 베트남 진출, 충북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업연수 등 농업분야 교역확대 및 호치민 지역 농업 분야 발전지원

- 베트남 경제중심지 호치민에 충북의 교류협력 교두보 확보
 - 베트남 최대도시와 자매결연 체결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현안의 효과적 추진가능
 - 해외 우수인력 활용, 도내 전략산업 핵심 경쟁우위 지속 유지, 직항 개설 통한 관광객 등 인적교류 확대 등
 - 호치민시, 베트남 최대 항구 소재하여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이 진출입하는 교역 허브로, 도내 농산물, 공산품 수출확대에 유리
 - ⇒ 경제협력을 통해 기업 간의 무역·투자 촉진, 시장확대 디딤돌로 활용
- 경제, 산업, 농업분야 등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 - 전략산업 인적교류·협력을 통해 지역공급망사슬구축, 도내기업 해외진출 등을 통한 산업·기업간 교류촉진, 경쟁력 강화
 - 포럼 참석 등을 통한 기업인 단체교류 등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 등 도내 농산물, 화장품 등 도내 우수 공산품 등 수출시장 확대
- 항공·관광 교류를 통한 인적교류 대폭 확대
 - 청주공항과 호치민 공항간 직항노선 개설 시, 양 지역 인적교류의 획기적 증대 가능
 - 기업인 간 비즈니스 협업 확대, 인바운드 관광객 증대 기대
 - 인바운드 관광객 확대를 통해 도내 관광객 5천만 시대 촉진
- 우수인력 유치, 대학·문화·스포츠 교류를 통한 문화융성 기반 강화
 - 호치민 우수 인력유치, 대학교류 등을 통한 지식공유, 공동 혁신창출 환경 조성
 - 문화, 스포츠 등 문화분야 다양한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, 미래 협력의 파트너로서 관계 심화

대한민국 충청북도와 베트남 호치민시 간

자매결연협정서

충청북도지사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충청북도와 호치민인민위원회위원장이 대표하는 베트남 호치민시(이하 “양 도·시” 라 한다)는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.

제 1 조: 일반적인 원칙

양 도·시는 국제교류사업이 양측의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 지원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, 동 사업이 양 지역 발전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.

제 2 조: 협력 내용

1. 양 도·시는 다음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상호 협력한다.

가. 상호 교역 증진 및 투자 촉진 지원 등 경제협력 관련 분야

나. 스마트팜 등 농업 및 원예 분야의 경험 교환 및 기술 교류

다. 호치민 우수 연구인력 유학, 연구인력 교류, 학생교환 등 양 지역 대학 간의 협력, 청소년 교류, 공무원 상호파견 등 인력교류 및 연수 교육 분야

라. 상호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직항노선 개설, 스포츠 교류 등 항공·체육·

관광분야 협력

마. 기타 양 도지사·위원장이 합의하는 분야

2. 양 도·시는 자국 내 법규를 준수하며, 협력증진을 목표로 한다.

제 3 조: 이 행

1. 충청북도 및 호치민시 정부의 해당 부서는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협력 분야를 실현시키기 위해 공동사업을 기획한다.
2. 제2조 1항에 관련한 업무조정을 위해 양 지역의 해당 부서는 동등하게 책임을 진다.
3. 제1항과 관련된 해당 부서는 공동 기획사업의 실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한다.

제 4 조: 집행조항

1. 본 협정서에 규정된 사업 실천과 관련하여, 양측은 각각의 국내법규를 준수한다.
2. 본 협정서의 해석 및 이행에서 발생된 모든 분쟁은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.
3. 본 협정서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4. 본 협정서는 무기한 유효하다. 다만, 협정의 파기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,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.

본 협정서는 동일한 내용의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작성하며, 양측이 이를 한 부씩 각각 보관한다.

2023. 12. 00.

대한민국 충청북도지사
김 영 환

베트남 호치민 인민위원회 위원장
판 반 마이
